##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75 발의연월일: 2024. 12. 31.

발 의 자: 강명구·성일종·박덕흠

이헌승 · 주호영 · 서명옥

박수민 • 조경태 • 김기웅

김성원 • 조배숙 • 임종득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4년 7월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2025년에 전체인구 중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고 있음.

노화로 신체기능이 약화된 고령인구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의료소 요 및 의료비 지출 또한 급증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고령인구 의료 비 증가는 개인의 가계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에도 부담을 주게 됨.

이와 관련하여 선진국에서는 노인 맞춤형 운동시설과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들의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상기와 같은 지출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우리나라 또한 노인들이 신체활동과 건강관리를 꾸준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한 형태로 '노인건

강증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영위 및 국가 차원의 재정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 36조제1항제5호 신설). 법률 제 호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노인건강증진센터: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인에게 특화 된 운동·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  |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  |  |
| 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     |                   |  |  |
| 의 시설로 한다.           |                   |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
| <u> &lt;신 설&gt;</u> | 5. 노인건강증진센터: 노인들의 |  |  |
|                     |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인에게   |  |  |
|                     | 특화된 운동·건강관리 프로    |  |  |
|                     | 그램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  |  |
|                     | <u>하는 시설</u>      |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